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심결사례

1999. 3. 9.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한진」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9812조기2132) (주)대한항공,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정석기업(주), 한국항공(주), (주)한국항공, 한진건설(주), (주)한진해운, (주)한진중공업, 한불종합금융(주))</p> | <p>(주)대한항공 등 대규모기업집단 「한진」(이하 「한진」) 소속의 8개 계열회사는 '98.2.9. 자신의 계열회사로서 3년 연속 적자회사인 한진투자증권(주)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 증자기준일 현재 주가보다 1,900원 높은 주당 5,000원씩 총 2,322,745주를 청약하는 등 동 유상증자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진투자증권(주)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주)대한항공 등 「한진」소속 3개사는 후순위사채는 무보증·부담보의 채권으로서 만기 전에는 상환이 금지되며, 파산시 다른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가 가능하여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한진투자증권(주)가 재무건전성기준의 충족 등을 위해 발행한 25,000백만원 규모의 후순위 사모사채를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낮은 15% 내지 16%p의 금리로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인수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주)한진해운 등 「한진」 소속 5개사는 '97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거양해운(주) 등 6개사가 발행한 총 357,900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85회에 걸쳐 정상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 계열사를 지원하였으며, (주)한진중공업은 '98년 2월부터 '98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한불종합금융(주)의 발행어음상품에 비계열회사 예금이자율보다 2.85% 내지 6.06%p 낮은 14.3% 내지 16.3%p의 이자율로 12,100백만원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동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한항공 : 558 · 동양화재해상보험(주) : 106 · 정석기업(주) : 62 · 한국항공(주) : 44 · (주)한국항공 : 244 · 한진건설(주) : 176 · (주)한진해운 : 171 · (주)한진중공업 : 491 · 한불종합금융(주) : 281 |
| <p>「동양」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9812조기2130) (동양시멘트(주), 동양제과(주), 동양생명보험</p> | <p>동양시멘트(주) 등 대규모기업집단 「동양」(이하 「동양」) 소속의 3개 계열회사는 '97.11.17.부터 '98.7.3.까지 총 73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동양파이낸스(주)가 발행한 260,988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비계열회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5.25% 내지 26%p 낮은 할인율</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p> |

심 결 사 례

| 사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p>(주), 동양증권(주), 동양종합금융(주), 동양창업투자(주), 동양파이낸스(주), 중앙투자신탁(주), (주)투니버스)</p> | <p>로 매입하는 등 자금사정 및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의 CP를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인수함으로써 동 계열사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동양시멘트(주)는 '97.12.9.부터 '98.5.29.까지 총 93회에 걸쳐 관계회사인 대원산업(주) 등이 발행한 359,893백만원 상당의 CP를 다른 종금사들이 매입한 금리보다 6.25% 내지 25.5%p 낮은 금리호 인수하는 방법으로 동 관계회사에게 현저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동양종합금융(주)는 '98.2.11. 2년 연속 대규모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동양」 소속 계열사인 동양카드(주)의 400억원 상당의 특수채를 동 특수채의 발행금리보다 6.5% 내지 17%p 낮은 17.8% 내지 17.65%p의 금리로 매입하였으며, 동양종합금융(주) 등 「동양」소속의 3개사는 '97.12.5.부터 '98.4.13.까지 총 21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동양할부금융(주) 및 동양카드(주)에 '97.12.5.부터 '98.4.13.까지의 기간 중 총 21회에 걸쳐 자신의 계열사인 동양할부금융(주) 및 동양카드(주)에 157,900백만원 상당의 콜자금을 동 자금에 대해 아무런 보증이 없었으며, 동사들의 재무구조 등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들이 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콜차입금리보다 6% 내지 16%p 낮은 14.5% 내지 25%의 이율로 대여하는 등 현저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동양제과(주) 및 투니버스(주)는 '97.4.3.부터 '98.3.20.까지 총 23회 및 9회에 걸쳐 특수관계인 소유의 개인사업체인 용산컨설팅 및 화학컨설팅이 동양종합금융(주)를 통해 발행한 총 10,063백만원 상당의 CP를 시중 할인율보다 5% 내지 30%p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사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인력 등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 <p>명의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시멘트(주) : 3,081 · 동양제과(주) : 584 · 동양생명보험(주) : 874 · 동양증권(주) : 863 · 동양종합금융(주) : 2,548 · 동양창업투자(주) : 57 · 동양파이낸스(주) : 514 · 중앙투자신탁(주) : 585 · (주)투니버스 : 71 |
| <p>「동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9812조일2131)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부건설(주))</p> | <p>대규모기업집단 「동부」(이하 「동부」)의 계열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는 '97년 12월중에 동부건설(주)가 발행한 총 465억원 상당의 무담보·무보증의 기업어음(CP)을 비계열금융기관이 매입한 CP 할인율보다 5% 내지 10%p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열회사인 동부증권(주)의 중개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부건설(주)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98년 1월 동부건설(주) 소유의 동부강남빌딩의 일부를</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의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심 결 사 례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하는 등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훨씬 초과하는 전체 보증금의 58.3%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사를 지원하였으며, 동부건설(주)는 '97.12.19. 삼동홍산(주)가 발행한 3,297백만원 상당의 무담보·무보증의 기업어음을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아 적기 상환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CP할인율보다 7% 내지 22%p 낮은 18%p의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사를 지원하였으며,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동부제강(주)로부터 아산만공장 건설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후 총 72,886백만원 상당의 어음에 대해 어음만기일을 5 내지 37일 연장해 주고 그에 따른 연장이자를 '98.9.30.까지 수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사를 지원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677 · 동부건설(주) : 693</p> |
| <p>「한솔」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9812조이2134) (한솔제지(주), 한솔화학(주), 한솔파텍(주), (주)한솔, 한솔씨에스앤(주), 한솔포렘(주), 한솔파이낸스(주))</p> | <p>대규모기업집단 「한솔」(이하 「한솔」)의 계열회사인 한솔제지(주) 및 한솔화학(주)는 '97.12.30.부터 '98.8.7.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한솔파이낸스(주)가 발행한 총 204,204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22회에 걸쳐 중앙종합금융(주) 등의 중개자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19% 내지 36%p의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 계열사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한솔제지(주)는 3년 연속 적자이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회사인 (주)경보가 발행한 67,700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 계열사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한솔파이낸스(주)는 '97.4.1.부터 '98.8.21.까지의 기간 중 2년 또는 3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한 한솔전자(주) 등 「한솔」소속 6개 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총 334,714백만원 상당의 무담보 유통어음을 70회에 걸쳐 평균 2.23%p 낮은 11.73% 내지 25%p의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 6개 계열사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한솔제지(주) 등</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 · 한솔화학(주) : 107 · 한솔파텍(주) : 61 · (주)한솔 : 161 · 한솔씨에스앤(주) : 110 · 한솔포렘(주) : 76 · 한솔파이낸스(주) : 569</p> |

심 결 사 례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 <p>「한솔」소속 6개 계열회사는 '98. 3.4.부터 '98.3.20.까지의 기간 중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솔빌딩에 대해 소유자인 한솔홍진(주)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후, '98년 3월부터 '98년 9월까지 매월 건물 유지관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사를 지원하였으며, 한솔제지(주) 및 한솔화학(주)는 계열회사인 (주)경보가 '97.11.15. 한솔유통(주)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한솔유통(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합병교부금 7,878백만원을 합병교부금 최종정산일인 '98.1.14.까지 (주)경보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14일이 지난 '98.5.8.에 수령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한솔제지(주)는 '97년 4월부터 '98년 3월 사이에 계열회사인 한솔피씨에스(주)로부터 "PCS상용서비스 신문광고" 등의 광고의뢰를 받아 자신이 신문용지를 판매하고 있는 동아일보 등 39개 신문사에 신문광고를 요청한 후 한솔피씨에스(주)의 광고료 4,934백만원을 각 신문사에게 자신이 판매한 신문용지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지급한 후 한솔피씨에스(주)로부터는 당해 광고료를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6일 내지 319일 지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동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 7호 위반</p> | |
| <p>「한화」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9812조이2133) (주)한화, 한화에너지(주), 한화종합화학(주), (주)한화유통, 한화파이낸스(주))</p> | <p>(주)한화 등 대규모기업집단 「한화」(「한화」) 소속 3개 계열회사는 '97년 4월부터 '9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3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한화에너지프라자(주) 등 4개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동 4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총 137,708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대한종합금융 등 8개 종합금융사를 통해 4회 내지 35회에 걸쳐 정상적인 할인을 보다 3.1% 내지 31.4%p 낮은 8.5% 내지 40%p의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동 계열사를 지원하였으며, (주)한화 등 「한화」소속 4개 계열회사는 계열회사인 한화증권(주)로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후순위사채를 인수·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98.3.27.부터 '98.6.30.까지의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한화증권(주)가 발행한 200,000백만원 규모의 후순위사채를 시중평균금리보다 최고 4.8%p 높은 13.3% 내지</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화 : 1,300 · 한화종합화학(주) : 2,003 · (주)한화유통 : 600 · 한화파이낸스(주) : 455 |

심 결 사 례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처 |
|--|--|--|
| | <p>18.5%p의 이자율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사를 지원하였으며, (주)한화는 '97년 12월 이후 추진중이던 베어링 사업부문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업가체 제고와 적대적 기업결합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의 취득 방안을 강구하던 중 외환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회사인 한화증권(주)로부터 수처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의 예탁요청을 받고 '98.1.16. 한화증권 중앙지점에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0백만원을 입금한 후 그 중 1,000백만원만을 자기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9,000백만원을 아무런 주식거래도 없이 당시 은행수신금리인 15.35% 내지 18.16%p보다 낮은 연 5%의 금리로 '98.2.22.부터 '98.4.9.까지 예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증권(주)의 차입이자율과 예탁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97년 4월부터 '9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한화유통과 한화마트 창원점신축공사 등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후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서 한화유통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유로 어음결제기간을 장기간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비계열회사보다 긴 180일 내지 303일간의 유리한 조건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비계열회사와의 어음결제기간 차이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금액은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화유통(주)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자신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 |
| <p>삼성생명(주)의 부당지원 행위 (9812조이2134)</p> | <p>삼성생명보험(주)는 '97.4.1.부터 '98.9.30.까지의 기간 중 한일은행 및 상업은행에 예탁된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주) 및 한솔전자(주)가 발행한 40,000백만원 및 6,000백만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각각 5회 및 12회에 걸쳐 직접 또는 신세계종금과 동부증권의 중개로 동일 CP의 시중금리수준보다 1.1% 내지 24.4%p 낮은 10.8% 내지 13.5%p의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투자 및 운용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친족독립경영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높은 대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3,565백만원</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주)진로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9810전사1653)</p> | <p>(주)진로는 주류도매사업자 등 1차 거래처와 유흥음식점 등 2차 거래처 등 자신의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과대한 현금 및 주문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급하고, 병마개 수거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 위반</p> | <p>◎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p>현대개발컨설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2광고2145)</p> | <p>현대개발컨설팅(주)는 '98.10.2. 경인일보 및 자신이 제작한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대부동 준농림지역에 대해 광고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나 세부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등 동 준농림지역을 관광지 또는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관광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의 획득으로 민간유치기본계획 고시 등으로 확실한 발전배경", "단기간내에 안산시 대부남동 개발추진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라고 표현하였으며, 실제로는 하수처리장 등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숙박시설이나 휴양촌, 연수원 등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경인일보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p>천안콘벤션센터의 거래 강제행위 (9812유거2089)</p> | <p>웨딩홀파라다이스는 드레스실 등 결혼예식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갖춘 결혼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예식실의 사용과 신부드레스 등 부대시설의 이용은 서로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예식장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예식실과 부대물품 또는 용역을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시설인 예식실을 임대하면서 임대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드레스 등 예식부대물품의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거래 강제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 위반</p> | <p>◎ 부당한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예식장 정문 출입구 등 고객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78.8cm×109cm)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사 건 명 | 위 반 내 용 | 시 정 조 치 |
|--|--|---|
| <p>서울우유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9810경축1692)</p> | <p>서울우유협동조합은 '97년말 IMF사태 이후 유제품의 수요가 급감하자 '98.5.9. 「98 성수기 비상판매전략」을 수립·시행하면서 자신의 우유보급소별로 전년도에 준하는 판매목표량을 부여한 후 실적이 부진한 목표 미달 하위 5%의 보급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제로 동 판매전략 시행 후인 '98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 목표미달 하위 5%에 해당하는 보급소 중 11개 보급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5개 보급소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분할이라는 제재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전략내용에 PUSH전략(소위 '밀어내기')를 포함하여 지점별 전년대비 성장률 최하위 10%의 보급소에 대해서는 각 지점에서 PUSH조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영업소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
| <p>(주)신한은행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2광고2184)</p> | <p>(주)신한은행은 '97.9.29.부터 9.20.까지의 기간 중 안내장을 통해 경기도 파주지역에 소재한 「효자그린빌라」의 분양과 관련한 중도금 대출안내전단을 통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입주 이전인 '97년 12월과 '98년 5월에 대출금리를 14% 및 17%로 인상함으로써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까지는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처럼 "입주시까지 년 12.80%, 입주시 실세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변동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해당 거래상대방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p> |
| <p>(주)서울문화사의 부당한 광고행위 (9811광고1998)</p> | <p>(주)서울문화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여성월간지인 「우먼센스」에 대해 전단지용을 이용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IMF이후 발생부수, 판매율이 성장한 종합여성지는 우먼센스뿐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한국리서치 자료에 의한 연령별 종합여성지 열독율표에서 우먼센스의 열독율은 15.7%, 4개 타경쟁지의 열독율은 15.2~3.7%"임을 도표로 비교광고하는 등 자체 조사한 판매율자료 및 한국리서치의 열독율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비교광고하였으며, "우먼센스에 계속 뒤지던</p> |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이 발행하는 우먼센스 뒷표지 앞면에 21cm×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여성중앙은 '95년 3월호를 끝으로 스스로 휴간'이라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경쟁지인 여성중앙이 마치 자신의 우먼센스에 밀려 휴간된 것처럼 부당하게 비방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

1999. 3. 19.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주)덕원산업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방조행위 (9812광고2184) | (주)덕원산업은 대일산업이 신규로 적출물처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98.9.10.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성림유화(주)와 적출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면 적출물의 위탁처리에 있어서는 지역 및 거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성림유화(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대일산업과의 적출물처리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출물처리시설 보유업자에게 적출물처리업 신규사업예정자와 체결한 적출물처리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종용하여 신규사업예정자의 사업개시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는 관할관청에 적출물처리업 신규사업예정자가 제출한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 ◎ 사업활동방해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방조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1999. 3. 19.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노원구지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방조행위 (9811공동1961)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노원구지회는 동 협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정보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부동산거래정보망을 지역별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정보망은 구성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설정보망의 이용을 중단케 하고 협회정보망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 | ◎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

심 결 사 례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해 '98.10.10.부터 10.20.까지의 기간중 자신의 분회나 친목회를 통해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사설정보망의 '계약해지신청서' 및 '부동산거래정보망관련의뢰서'를 제출받아 계약해지신청서는 신고인에게 발송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관련의뢰서는 분회 또는 친목회별로 수취 후 폐기토록 하였으며, '98.10.20. 노원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사설정보망 이용중지 등을 결의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p> | |

1999. 3. 22. 심결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 회원조합의 경쟁제한행위 (9805단체0695)</p> | <p>창호형 알미늄사시 생산업자 및 판매업체들로 구성된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97년 8월경 원재료인 알미늄가격이 상승하고 환율 및 금리인상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자 '98.9.8.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97.9.20. 등 네차례에 걸쳐 알미늄의 공장도가격을 각 등급별로 kg당 각각 200원, 500원, 500원, 300원씩 인상·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 등 특별회원인 46개 생산업체에게 통보하였으며, '97.9.11. 및 '97.11. 26. 두차례에 걸쳐 영남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남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6개 사업자들로부터 자신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97.11.28.에는 경인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인지역 영업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가격의 준수를 요구하였고, '97. 12.5. 알미늄제품의 공장도가격의 인상과 함께 구성사업자가 구매자들로부터 지불받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기로 하는 등 거래조건 또는 대금결제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생산업체들에게 통보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원가구조나 자금사정, 시장상황, 경영전략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알미늄제품의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알미늄 압출제품의 생산 및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50백만원</p> |

심 결 사 례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p>(주)씨씨마트의 프랜차이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9약일1604)</p> | <p>(주)씨씨마트는 고객과의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시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가맹사업자의 영업표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한 이후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만 가맹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고 가맹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
| <p>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의 제품판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9약일1441)</p> | <p>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은 고객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변제총당순서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변제자인 고객이, 2차적으로는 변제수령자인 자신이 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제품판매계약시 사용하고 있는 제품판매계약서상에 자신이 임의로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제수령자인 자신이 변제자인 고객의 지정총당권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변제총당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계약의 해지나 해약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에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해지사유를 특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그 내용상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서상에 자신이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방 통보로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사유가 계약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p> |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

| 사건명 | 위반내용 | 시정조치 |
|---|--|---|
| | <p>있으며, 그 사유도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 |
| <p>한화파이낸스(주)의 어음거래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 (9807약일1117)</p> | <p>한화파이낸스(주)는 고객과의 어음거래계약 체결시에 사용하고 있는 어음거래약정서상에서 어음거래약정에 있어서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어음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음거래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므로 추가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기존 연대보증인이나 기존의 계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본 약정을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경우 당초 약정한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의 이익상실과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동 약정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본 약정서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타 채권보전상 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규정하여 자신이 자의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 17조 위반</p> |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